

공간조정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03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공간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공간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대학의 창조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기본 계획 수립
2. 대학시설 내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계되는 주요 사항
3. 대학시설 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위원으로는 행정부총장, 기획실장, 교육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스텝원장이 추천한 스텝별 1인은 임명직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사무) 본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공간조정 담당부서 관리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